

#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39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사회투자기금 '20년 결산결과 '21년 예치금 수입이 증가하였고,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융자사업비 규모 확대가 요청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위기극복을 위한 융자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융자성 사업비를 6,000백만원 증액하고,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를 증액 반영함
- 나. 예치금 회수 증가분에서 융자성 사업비 및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분을 차감한 잔액 4,680백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함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수입 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계	20,154	31,549	11,395
전 입 금	8,500	8,500	-
용 자 금 회 수 ( 이 자 포 함 )	7,142	7,142	-
이 자 수 입	65	65	-
기 타 수 입	100	100	-
예 치 금 회 수	4,347	15,742	11,395

<지출 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	변 경	증 감
계	20,154	31,549	11,395
용 자 성 사 업 비	17,500	23,500	6,000
비 용 자 성 사 업 비	1,780	2,495	715
기 본 경 비	20	20	-
예 치 금	854	5,534	4,680

○ 수입계획 : 20,154백만원 → 31,549백만원(11,395백만원)

- 예치금회수 : 4,347백만원 → 15,742백만원 (증 11,395백만원)

○ 지출계획 : 20,154백만원 → 31,549백만원(11,395백만원)

- 융자성 사업비 : 17,500백만원 → 23,500백만원 (증 6,000백만원)

- 비용자성 사업비 : 1,780백만원 → 2,495백만원 (증 715백만원)

- 예치금 : 854백만원 → 5,534백만원 (증 4,680백만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기금운용계획 변경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김나영 (☎ 2133-5477)